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무원여비규정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이를 반영한 국내여비 지급방안을 정비하고,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규정된 공무 출장 중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의 근거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도 명시하여 기부금의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20. ~ 6.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가 기부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제3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비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2호의 숙박비 상한액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기부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⑤ (생략)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 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하 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 을 말한다.	⑤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포함하 되, 「지방자치법」 제2조 제1 항 제1호의 통합특별시에 대해 서는 종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 로 한다----- -----.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제2호의 숙박비 상한액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386